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89

발의연월일: 2020. 12. 1.

발 의 자 : 임오경ㆍ이수진ㆍ유정주

이상헌 · 장철민 · 김민철

박성준 · 윤후덕 · 서영교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이나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키우고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음.

이에 화장품제조업자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호).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 는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조의3(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 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 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 제조업만 해당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1.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 법률 | 제3조제1호에 따른 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다)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 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 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 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